

ITC와 미국 관세법 제337조 (I)

1.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내 생산, 고용, 소비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무역(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요소들을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독립적, 초당파적, 준사법적인 연방기관이다. 동위원회는 1916년 미국 관세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1974년 Trade Act(통상법령)에서 개명되었다. 위원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 의회 동의를 얻은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460여명의 Staff(직원)이 위원을 보조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무소는 워싱턴 DC에 있으나 위원회는 어느곳에서나 회의(Meet)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1930년 관세법령, Agricultural Adjustment Act, 1962년 무역발전법령, 1974년 무역법령, 1979년 무역협정법령, 1988년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광범위 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의 460명 직원은 행정법을 판사, 변호사, 경제학자, 조사가, 상품분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관련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됨을 규

정하고 있다.

- 1) 어떤 개인, 회사, 협동조합, 기업, 협회가 소유한 해당분야에 관련된 서류, 기록을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 2) 증인을 소환, 증언, 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3) 조사에 포함되는 어떠한 사항에 연관되어 있는 서적이거나 서류를 개인, 회사, 기업, 협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개인, 회사, 기업, 협회에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위원회가 규정하는 형태, 세부사항, 서술형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General Overview Of Section 337

가. 실제조항

Section 337은 수입업무에 있어서 미국기업이 불공정행위 또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337조(a) 1)(A), (B), (C), (D), 는 다음사항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A)는 수입업무에 있어서 미국에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행위에 의한 수입이나, 소유자, 수입자 또는 위탁판매인이 그 같은 제품을 판매할 때 미국산업을 파괴하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손해를

미치거나 회사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미국에서 무역 및 상업을 제한 하던가 혹은 독점하는 것

(B)는 아래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혹은 소유자, 수입자 혹은 위탁판매인에 의해 수입후 미국내에서 판매, 타당하고 실시가능한 미국특허나 US Code Title 17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타당하고 실시가능한 미국특허 클레임에 의해 보호되는 절차 및 수단에 의하거나 혹은 보호되는 상황에서 제조/생산/공정 등에 의한 침해 행위

(C)는 제품들의 소유자, 수입자 혹은 위탁판매인에 의해 수입후 미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혹은 수입을 위한 판매 및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이 상표를 도용하여 타당하고 실시가능한 미국 상표 등록법을 침해하는 행위.

(D)는 반도체 Chip제품의 소유자, 수입자 혹은 위탁판매인에 의해 수입후 미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혹은 수입을 위한 판매 및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이 Us Code Title 17의 9장 이하에서 Masd Work 등록법에 의해 침해되는 행위.

337조 (a) (2)의 조항은 특허, 저작권, 상표권 혹은 Mask Work에 의해 보호된 제품에 있어 미국에서 산업이 존재하거나 혹은 설치된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337조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

337 (a) (3)은 국내산업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영역을 정의한다.

- i) 공장과 장비에 있어서 주요한 투자를 한 경우
- ii) 주요한 인적고용 혹은 자본을 투자한 경우
- iii) Engineering, 연구개발 혹은 Licensing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투자를 한 경우.

나. 337조 진행절차

위원회는 조사개시 공고후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 개선명령

① 배제명령과 정지·중지 명령

만약 위원회가 337조 침해를 발견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명세에 포함된 제품을 강제 추방시킬 수 있는 명령을 발효시킬 수 있거나 혹은 사람에게 직접 불공정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임시구제

조사 완료전에라도 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337조 침해가 합당하다고 믿을 때 임시명령을 취할 수 있다. 임시 배제명령은 예치금을 내고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된 제품의 명세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③ 구제를 제한하는 공익요소

337조를 위반하여 판정되는 결과는 배제명령 및 중단시킬 수 있다는 법령으로 인해 필수적인 것

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이든간에 중단명령과 배제명령에도 적용이 된다.

④ 쉼식규정

1988년 개정안 이전에는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쉼식피제조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었으나 제조자가 우선 실질적인 제조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988 개정안에 따르면 2가지 방법으로 쉼식피제조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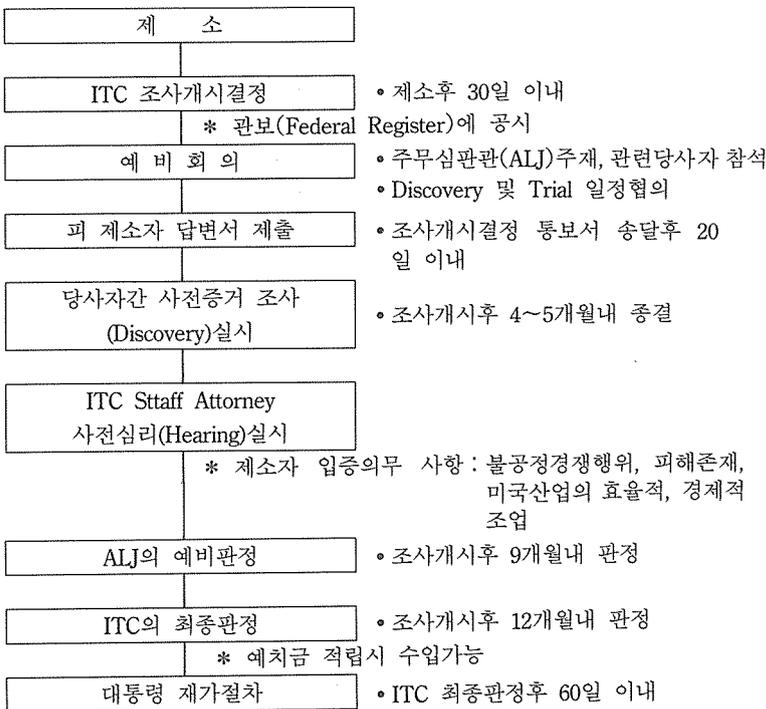
- 1) 피제조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제조에 응하지 못하거나 조사 통보에 회신이 없을 경우
- 2) 피제조자가 쉼식이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 3) 제조자가 관련 당사자에 한해 구제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제조장의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간주할 경우와 공익요소들을 감안하여 그러한 주제명령이 없을 경우 쉼식 피제조자에게 배제명령 또는 중단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두번째로 Section 337 (g) (2)는 “피제조자가 337조 조사에 불응하는 듯 하면 일반배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위원회는 피제조자가 조사에 대한 의의가 없거나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명자료에 의해 337조 위반이 성립될 경우 위원회는 또한 배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대통령의 심사권한 : 명령의 존속기관과 철회

337조의 위반 또는 구제명령이 필요한 위반사항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회부되

미국 ITC의 관세법 337조 위반조사 절차



어야 한다.(특히 대통령 직속기구인 USTR) 대통령은 위원회의 결정내용 접수후 6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정책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 통보를 위원회에 하는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대통령이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실시하는 동안 위원회의 명령은 항구적인 배제명령과 중단명령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있으며, 관련 물품은 임시배제 명령인 경우에 예치를 해야한다.

대통령이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최종적이며 이에따라 발표된 위원회의 어떠한 명령도 효력이 유지된다. 위원회는 존속이유가 없을 경우 임시적 또는 항구적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특허침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령은 특허권이 지속되는 동안 유지된다.

1988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337조 위반이라고 판정하는 개인이 위원회에 배제명령 및 기타명령을 위배하지 않거나 변경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337 (K) (2)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소자는 사실증명의 부담을 안게 되며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 사실로 연방민사소송법에 따른 판정이나 명령에 따른 구제명령이 허용하는 근거에 따라 구제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마.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337조 위반(또는 위반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

회의 최종판정이 나면 피제소자는 6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소자는 337조 위반이 없거나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순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판결내용은 대통령에게 회부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판결이 되며, 그 시기부터 제소기간에 해당된다.

3. 구제방법

가. 일반적인 구제의 순서

적당한 구제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양 담당자로부터 중재부탁을 받는다. 위원회는 3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포괄적 배제명령

조사대상이 제조자이건 수입자이건에 관계없이 모든 침해 제품 수입을 금지

2) 제한적 배제명령

피고대상이 제조·판매한 침해제품만을 수입금지

3) 정지명령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침해제품을 판매·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 가처분 수입금지 명령이나 가처분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나. 배제명령

① 영구 배제명령

33조항·337조 위반시 미국으로의 수입배제 명령조치 가능, 위원회에서 상기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영구 배제명령이라고 하며 영구배제명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

i) 일반배제명령-가장 강력한 명령

ii) 제한배제명령-337조 침해자의 제품침해시에만 해당

a. 일반 배제명령

일반 배제명령은 제한배제명령에 비해 원고측에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운다.

i) 원고는 특허발명 불법사용의 광범위한 패턴

ii)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조사대상 이외의 외국기업들이 침해물건으로 미국시장에 진입하려 했다는 사업환경 등의 입증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의견

가. 광범위한 불법사용의 패턴

i) 다수의 외국제조업체가 불법적으로 침해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행위.

i) 문제된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외국특허에의 외국침해 소송

iii) 외국에서의 문제된 특허의 불법사용에 대한 추가 자료

나. 피고자 이외의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려 했다는 사업환경의 증명

i) 미국내 특허사용 제품에 대한 수요

ii) 미국내 마케팅과 유통구조의 존재 유무

iii) 외국 제조업체의 수와 능력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또한 판단에 의해 비침해 제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는 수입배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b. 제한적 배제명령
상기의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한 배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 침해제품과 결합된 2차 제품을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 침해 제품이 사용되었을 경우의 배제명령이 있다.

② 가치분 명령

침해조사 기간중에 위원회의 직권으로 내리게 된다. 337조 2항에 따라 337조를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내리게 되며 연방지방법원에서의 가치분 명령 판결시의 성립조건과 유사하다.

- 1) 원고측의 승소가능성이 없을 때
 - 2) 가치분신청이 없을 경우 소송 기간중 원고가 심각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
 - 3) 가치분 판정시 원고측의 피해가 제3자의 피해보다 큰 경우
 - 4) 예비판정이 공공의 관심사일 때
- 포괄적으로 배제명령과 달리,

재수출 Bond를 담보로 수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만약 침해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예치금은 반환된다. 1988년 Omnibus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가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고측에 예치금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c. 정지명령

위원회는 포괄배제명령이나 제한배제명령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개는 이미 미국에 침해제품을 수입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337 (f) (2)항에 의거, 매일 \$100,000이하이거나 수입된 침해제품 가격의 2배를 문다. 원고는 침해제품의 국내 재고물량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가치분 수입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가치분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ITC 결정에 대한 재고

가. 대통령의 재고

위원회가 337조의 위반을 발견

하고 그 구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 비승인 될 수 있다. 대통령은 60일간 위원회의 명령을 검토하고 단지 '정책적 이유들'로 비승인을 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통령의 검토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 물품의 수입은 계속되는데, 가치분 기간동안 재수출 본드(보세창고)로 이루어진다. 337(j) (4)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되거나 위원회에 의해 명령되는 임시구제는 대통령이 60일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며, 충분한 효력이 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비승인이 있을시, 원고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얻지 못한다.

